##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83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김승원·박지원·강훈식

박균택 • 장경태 • 이광희

이성윤 · 박범계 · 권칠승

민병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가 사자(死者)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명의인 이외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부재함.

이에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비밀보장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 법률 제 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명의인에게"를 "명의인(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제1항제5호에서 같다)에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	의 통보) ①
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 · 제2호(조세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	
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	
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u>명의인에게</u> 서면으로 통	명의인(명의인이 사망하거나
보하여야 한다.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
	제1항제5호에서 같다)에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